

석유대체연료 판매업(주유소)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7일
------	------	------------

신청인	대표자 성명	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)
	주소	
	상호	전화번호
	주된 영업소의 소재지	

보유시설	저장시설	소재지	용량	kl (개)
	주유기 수	대	부지면적	m²
	기타			

취급 제품

사업개시 예정일	년	월	일
----------	---	---	---

기타

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33조제1항·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·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대체연료 판매업(주유소) []등록 []조건부 등록을 신청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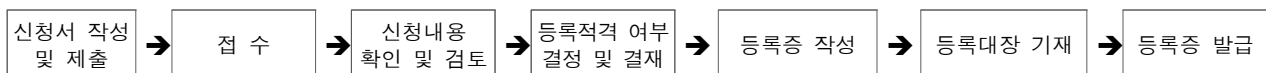
이
의
의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시 · 도 지 사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지하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(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) 1부 2. 주유기 명세서 1부 3.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4.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영 별표 2 제2호나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	수수료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
------	--	--

처리절차



신청인

처리기관: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(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허가업무 담당 부서)